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56 발의연월일: 2025. 5. 9.

발 의 자:민형배・이개호・김현정

주철현 • 김문수 • 김동아

박지원 · 문정복 · 소병훈

이성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,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에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 상인 자 또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 통업자로 간주합니다.

그러나 백화점, 대형마트, 복합쇼핑몰 등이 입점업체와의 계약에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정률 수수료를, 그 미만일 경우 정액 수수료를 받는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, 매출이 급감하 는 경우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
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, 임차료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

화하고자 합니다(안 제17조제10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1호(종전의 제10호) 중 "제9호"를 "제10호"로 한다.

10.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) 제17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차료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)	제17조(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)
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	
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	
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0.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
	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요하
	<u>는 행위</u>
<u>10.</u> 그 밖에 제1호부터 <u>제9호</u> 까	<u>11.</u>
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	
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	
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	
는 행위	